

연지급 신용장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영·미법원 판결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ucp500과 ucp600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American
Sentences on the Reimbursement Request of Deferred
Payment Credit
— focus on ucp500 and ucp600 —

이 대 우*

Dae-Woo Lee

김 종 락**

Jong-Rack Kim

〈 목 차 〉

- | | |
|---|--------------------------|
| I. 서론(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 분석) | IV. 영국 및 미국법원의 판결의 비교 분석 |
| II.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미국뉴욕법원의 판결분석(ADIB Bank V. Fortis Bank) | V. 결론 (판결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
| III.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영국상소법원의 판결분석(Banque Paribas V. Banco Santander) | 참고문헌 |
| | Abstract |

주제어 : 연지급신용장, 연지급확약서, UCP500, UCP600, 상환청구권, 매입은행, 연지급은행, 사기거래방위권, 지급금지가처분명령

*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및 금융연수원 강사, 주저자, dwl47@hanmail.net, 010-3668-1630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교신저자, jongrackkim@hanmail.net, 010-4133-4760

I. 서론

기한부신용장에는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 두 종류가 있는 바 인수신용장은 환어음을 일반적으로 동반함으로서 관련 서류가 제시될 때는 인수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환어음의 인수에 의하여 그 정해진 만기일에 대금이 지급되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외에 인수지의 환어음법이 적용되며 이 환어음법에 따라서 인수은행은 만기일에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수신용장은 순수한 인수신용장과 매입이 가능한 인수신용장이 있다. 매입이 가능한 인수신용장은 신용장의 조건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인수신용장은 인수를 해외은행이 하는 경우는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인수되는 경우는 국내은행 인수신용장이라고 한다. 또한 인수신용장은 은행이 인수한 환어음을 은행인수어음(B/A어음)이라고 하며 인수시장이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은행인수어음이 바로 인수시장에서 할인되어 자금조달이 아주 쉬운 것이다.

반면에 연지급신용장은 원래 지급신용장의 일종으로서 대금을 서류제시 후 일정 기한 후에 지급하는 신용장으로서 연지급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는 만기일을 정하여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그 연지급확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환어음에 의한 인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일 전에 사전 할인지급이나 매입이 일어날 수 없는 신용장이다. 따라서 연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만기일 전에 연지급은행이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만일 연지급은행이 만기일 전에 할인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자기계산에 의한 일종의 여신행위이고 신용장 거래에 의한 지급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연지급신용장의 특징이며, 주로 환어음거래를 선호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연지급신용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준 후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대금지급을 한 경우에 만약 만기일 전에 그러한 거래가 사기거래 등 불법한 거래일 경우에 할인은행이 연지급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대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영국과 미국의 법정 및 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연지급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만기 전에 선의로 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한 은행이 대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영국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최근 미국의

법원에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국법원의 판결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UCP600과 UCP500의 연지급신용장규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심도 있게 관찰하여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및 매입에 관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응책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연구범위 및 방법은 국내외 논문과 문헌을 참조한 문헌적 연구와 각국의 관련 판례와 case를 분석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의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으나 연지급신용장의 해외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선 한주섭 한재필의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 연구¹⁾”가 있으나 이는 영국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이며 미국법조계의 의견도 소개한 상당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이 논문은 UCP500 하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법조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하여 영국법원의 법 논리적인 판결보다는 미국 법조계의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연지급 만기일 전에 지정은행이 할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만기일 전에 해당 거래가 허위 또는 사기 거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 등을 이유로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병석의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²⁾”이 있으나, 이는 국내의 연지급신용장의 매입에 대한 국내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서 국내 사례분석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오병석의 논문은 한국의 기업은행과 파리 국립은행 간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³⁾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약에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지급 만기일 전에 매입 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발행은행은 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선적서류상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매입은행의 지정이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류매입을 위한 매입은행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은행(원고)의 상환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영국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주섭 한재필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7.2.28 pp 211-240

2)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무역학회지」 제 29권 제 2호 2004.4 pp 249-270

3) 대법원판결 2003.1.24 선고 2001과 68266판결

Ⅱ.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미국 뉴욕법원 판례분석 (ADIB BANK V. Fortis Bank)

1. 사건의 개요

최근 뉴욕법원의 판결⁴⁾에 따르면 UCP600 하에서는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및 할인에 관하여 연지급은행의 사전지급 또는 매입이 가능하고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Fortis Bank 대 Abu Dhabi Islamic Bank 사건에서 연지급은행인 Abu Dhabi Islamic Bank(이하 ADIB라고 한다.)의 사기거래에 의한 지급거절을 부인하고 매입은행인 Fortis Bank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연지급은행인 피고은행 ADIB는 개설은행인 Bank Awal의 자회사인 Saad Group의 개설의뢰에 따라서 발행된 US\$ 40,000,000의 L/C를 통지하고 확인하였다.

ADIB(연지급은행)의 확인서에는 상업서류의 사본의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고 추가조건으로 신용장금액과 유효기일 외의 모든 하자사항은 기본적으로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또한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일치된 수출서류를 수령하여 개설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으면 수출자가 발행한 360일 화환어음 만기일에 연지급은행 앞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다. 그 후, 매입은행인 Fortis Bank는 ADIB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수출자에게 통지하였고 확인수수료 US\$ 500,000를 추심하여 지급하고 일치된 서류의 매입을 하여 만기일에 상환청구할 것을 ADIB에게 통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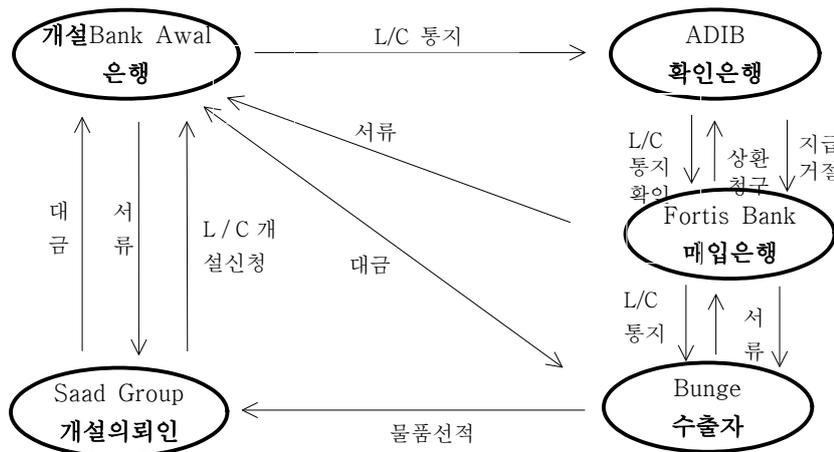
그 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은 재정적으로 기타 다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만기일에 확인은행인 연지급은행인 ADIB는 Fortis Bank의 상환청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용장거래가 개설은행과 수출자 그리고 매입은행에 의하여 사기거래로 행해졌다는 것이었다. 즉 L/C금융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거래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상품 수출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거래는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L/C 상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금융이라기보다는 자금유통을 위한 거래라고 증언하고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360일 어음을 할인해주면 수출자인 Bunge가 이 자금을 다시 개설은행으로 송금하였다. 이것은 연지급은행의 확인조건을 이용해서 개설은행 및 개설의

4) 601948/09 NY Sup Court Aug 26 2010.

뢰인에게 360일 간 자금을 융통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물품거래와는 전혀 관계없는 융통거래이었다. 이것은 수출자인 Bunge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에게 주선하는 물품의 내부거래 또는 재판매거래와 관련된 금융이고 이는 신용장거래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서류거래라는 단순성을 이용하여 무역금융으로 위장한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DIB가 주장하기를 비록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사기거래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Banco Santander V. Banque Paribas 사건에 근거하여 ADIB의 사기거래 주장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Banco Santander Case⁵⁾의 사례에 따르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연지급 L/C의 서류를 확인한 은행(확인은행)은 그 후 만기일 전까지 수출자의 사기거래위험을 저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DIB(연지급은행)는 매입은행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상의 사건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DIB V. Fortis Bank >

2. NY법원의 판결

뉴욕 주법원은 ADIB의 Banco Santander 사례에 근거하여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UCP600의 변경된 규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Banco

5) 한재필 「회환신용장론」(주)두남 2008.p322,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pp211-141, Jim Barners “ The Santander Case” DC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2.

Santander Case의 경우 영국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지정은행은 연지급 L/C의 사전지급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뉴욕법원의 사건에서는 UCP600 제 12조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법원은 UCP의 그러한 변경된 조항에 의거하여 Banco Santander case는 더 이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ADIB에게 연지급L/C의 특이한 성격과 확인은행으로서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확정사기거래 항변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그러한 사기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발견해야하는 근거도 없고 사본서류를 취득하도록 허용했다는 것과 확인지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기거래에 따른 항변사유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⁶⁾

3. 판결에 관한 분석

이번 판결은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의 독립성이란 차원에서 사기거래 예외원칙과 UCP600의 적용관계에 관해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번 뉴욕법원의 판결은 변경된 UCP600에 근거한 판결로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 전 사전할인지급이나 매입이 가능하므로 선의로 지급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항변으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Banco Santander Case에 의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이러한 연지급 L/C 거래에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 영국법원의 판결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확인은행인 Santander은행이 할인한 서류에 대해서 만기 전에 연지급은행인 Paribas은행 앞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영국법원은 Santander은행의 할인은 신용장거래가 아니며 자기계산에서 행한 여신행위에 불과하며 확인은행의 선의 소지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거래에 의한 예외 원칙을 적용하여 지급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두 판결은 상당히 대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뉴욕법원의 판결은 할인은행을 선의의 소지인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장거래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용장거래에서 사본서류의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고 모든 하자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포기하게 한 점, 선적서류는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하도록 하고 대금은 확인은행에게 청구도록 한 점 등이 규정된 신용장은 좀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그 서류의 할

6) James G. Barners, is Senior Counsel at Baker & Mckenzie LLP, Chicago Illinois, US. "UCP600 and Banco Santander" DC Insight Vol12 No2, April-June 2011, p19

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뉴욕법원의 견해는 L/C관련법과 관습상에서 연지급은행의 의무의 강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다른 확인거래금과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무역금융이나 이슬람금융, 부보되는 상품수출금융과도 동일하지 않게 일어날 수도 없고 다르게 제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텐드바이 L/C의 경우에 향후 거래의무의 동일성을 떠나서 요청된 금액을 개설의뢰인이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 본다고 하였다. 결국 연지급신용장의 사전할인지급이나 매입한 지정은행에게 연지급은행은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한 이상 이러한 지정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L/C거래에서 발생한 사기거래의 리스크는 연지급은행이 부담해야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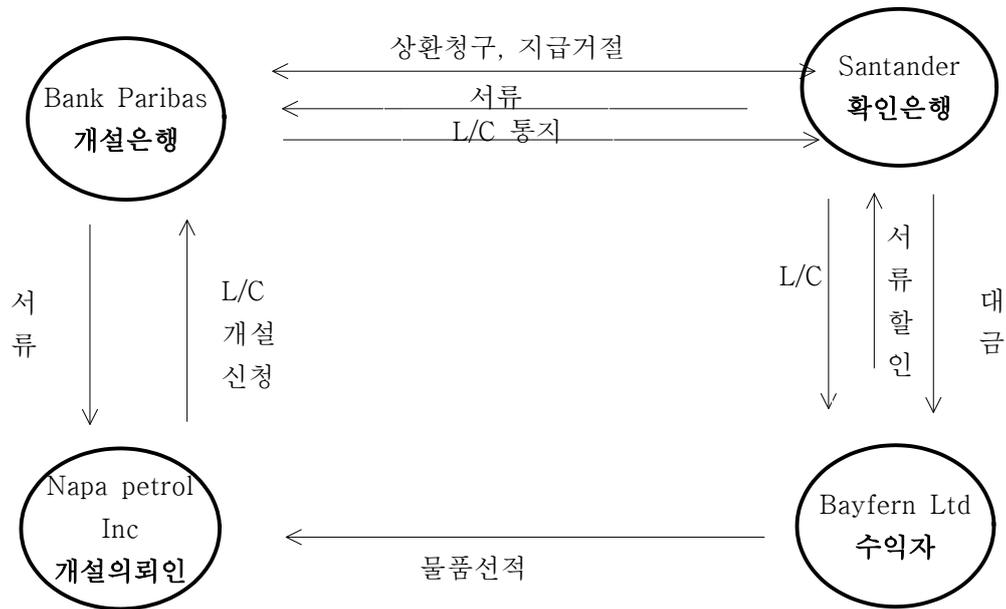
Ⅲ.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영국상소법원의 판례분석 (Bangué Pasibas V. Banco Santander)

1. 사건의 개요

프랑스의 수입자 Napa petrol, Inc은 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5일에 Banco paribas(개설은행)에 의뢰하여 영국의 수출자인 Bayfern Ltd를 수익자로 하여 선적서류 발행일자 후 180일(1998년 11월 27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연지급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 신용장은 영국의 Banco Santander 은행에 의하여 통지되고 확인을 추가하였다(1998.6.8). 수출자인 Bayfern은 1998년 6월 15일에 런던 소재 Santander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할인을 요청하였으며 Santander은행은 1998년 6월 16일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류를 할인하여 Royal Bank of Scotland의 Bayfern계정으로 US\$ 19.6 million을 이체하여 주었다.

Paribas은행은 6월 15일에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연지급확약서에는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면 1998년 8월 27일에 US\$ 20.3 million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Santander은행은 선적서류의 할인 시에 Bayfern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할인 및 양도요청서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 요청서한에는 수출자인 Bayfern이 “본 신용장에서 그의 모든 권리를 확인은행인 Santander에게 취소불능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있었고 이러한 할인사실 및 양도서한은 발행은행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8년 6월 24일에 개설은행인 Paribas(연지급은행)는

Santander은행에게 제시된 서류에 허위서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왔다. 그 후 Bayfern은 사기거래로 인한 유죄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게되었는데, 연지급 만기일인 1998년 8월 27일에 Santander은행은 연지급은행인 Paribas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Paribas는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Santander는 Paribas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대금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⁷⁾



< Bank Paribas V. Santander >

2. 사건의 분석

사건의 논쟁점은 첫째 확인은행인 Santander은행이 연지급신용장을 만기일 전에 할인할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연지급신용장은 그 신용장의 특성상 만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만기일 전에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 아니므로 연지급은행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7) Roger Kreitman, Mantisa "UCP600 The L/C insight", October 2005, p.4 Bamco Santander SA v Banque Paribas [2000] 1 All ER (Comm) [England]

이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Santander 은행의 할인행위는 자신의 계산 하에 한 것이며 이는 신용장에 의한 할인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수출자와 지정은행 간의 권리의 양도, 양수에 의한 대출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기일 전에 수출자의 사기행위가 밝혀진 이상 이러한 수출자의 사기행위는 양수인인 지급은행에게도 그대로 이전되므로 연지급은행은 이러한 지정은행을 선의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지급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⁸⁾

이에 대하여 미국통일상법(UCC)은 연지급신용장이라도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한 후에는 만기일 전이라도 신의성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여 할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단순한 양도 양수를 떠나서 확인은행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개설은행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둘째 확인은행인 Santander은행이 연지급신용장에 근거하여 할인을 행한 후 만기일 전에 연지급은행으로부터 사기거래의 통지가 있을 경우 만기일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지급 만기일 전에 사기거래가 밝혀진 경우에 연지급은행은 이러한 사기거래를 근거로 지급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기거래와 관련하여 소위 Fraud Defence 문제로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 발행 후 만기일 전에 사기거래가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사전 할인행위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확인은행에 의한 만기 전 할인행위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 행위가 아니고 자기계산에 의한 지급행위에 불과하며, 사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연지급은행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연지급은행이 요청에 따른 확인행위를 하였다면 만기일에 상환청구권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Santander은행이 연지급은행에 대하여 할인하였다고 다투는 경우는, 연지급신용장의 특성에 따른 금반언의 원칙¹⁰⁾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서 연지급은행의 상환청구권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¹¹⁾

8) Roger Fayer "DC Insight," volume 6 no3 summer 2000. p.2

9) James G. Barnes "DC Insight" volume 6 no3 summer 2000. p.5

10)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 Ltd 1984 p32.

이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견해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의 사기에 관한 통고를 접하기 이전에 수익자에게 할인하여 대가를 지급한 할인은행에 대해서 연지급은행이 이미 연지급의무이행의 확약을 하였으므로 수익자의 권리양수인의 입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양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확인에 의하여 인수, 지급한 확인은행의 입장을 인정하여야 하고 연지급은행으로부터 수익자의 사기의 사실의 통보에 관계없이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기에 관하여서는 연지급은행에 의한 법원의 지급금지 가처분명령이 있지 않는 한 확정사기의 통보¹²⁾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신용장상의 의무를 인수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수, 지급을 이행한 당사자는 보호되어야 하며 Santander은행은 확인은행으로서 그의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법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미국의 UCC의 신용장통일규칙규정에도 이러한 사실이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지급신용장에서 할인은행이 선의의 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의 개념은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여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하는 환어음의 취득자 또는 소지자를 의미한다.” 보통 매입가능신용장(negotiable credit)에서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을 통하여 탄생된 환어음 소지자를 선의의 소지자라고 한다. 신용장 조건에 매도약관(negotiable clause)를 추가하여 선의의 환어음소지인이 발생하면 이는 계약근거의 이행과정에서 연유된 위조 또는 사기를 이유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되는 일이 없다.¹⁴⁾ 그러나 이번사건에서는

11) Roger Fayer op eit p2

12) UCC Art 5-109(2)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은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이 통고되지 않는 한 확정사기사실의 통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용장상의 의무를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되지 않다.

13) UCC A25 5 (Revised 1995) comment 5-109 (2)

: Because issuers may be liable for wrongful dishonor if they are unable to prove forgery or material fraud, presumably most issuers will choose to honor despite applicant's claims of fraud or forgery unless the applicant procures an injunction. Merely because the issuer has a right to dishonor and to defend that dishonor by showing forgery or material fraud does not mean it has a duty to the applicant to dishonor. The applicant's normal recourse is to procure an injunction, if the applicants is unable to procure an injunction, it will have a claim against the issuer only in the rare case in which it can show that the issuer did not honor in good faith.

할인은행인 Santander은행에게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Santander은행의 할인행위는 연지급신용장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신용장거래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계산 하에서 행한 여신행위에 불과함으로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매도인의 권리양수인의 지위만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영국법원의 형평법에 근거하여 신용장거래의 법 논리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이고 실무적인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결 및 시사점

영국의 상소법원은 연지급은행인 Paribas는 상환받을 권리가 지급만기일에 발생 하는 것이므로 사기거래예외(fraud expection)의 원칙에 따라서 할인은행(Santander)에 대해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로서 연지급신용장은 할인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약에 할인을 하고자 한다면 연지급은행(Paribas)으로부터 이에 대한 권리와 확인(동의)을 취득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할인을 했다면 그 할인사실을 연지급은행에 통고하고 이에 대한 확인(동의)를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할인은행(Santander)이 연지급은행(Paribas)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Santander의 할인행위는 신용장상의 지급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상의 지급의무를 해제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Santander은행의 할인행위는 계약상 권리의 양수행위로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r holder)의 지위가 아니고 다만 수익자의 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할인은행은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연지급은행은 사기행위를 행한 수익자(Bayfern)에 대하여 사기거래 항변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Santander은행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14) William Yaro, "Drafting and Negotiable Letter of Credit terms" ed by Charles E aster & katheryn c Patterson in a Practical guide to Letter of Credit, EEP 1990,p 24

IV. 영국 및 미국법원의 판결 비교검토

1. 사건 당사자

첫째 ADIB Bank V. Fortis Bank 사례는 확인은행(연지급은행)과 지정은행 간의 분쟁사건이다. 이 사건은 확인은행이 연지급확인서를 발행하고 지정은행인 Fortis Bank가 연지급신용장을 할인한 사건으로서 확인은행인 Fortis Bank가 상환청구에 대하여 사기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례이다.

둘째 Paribas V. Santander 사례는 개설은행인 Paribas 은행과 확인은행 간의 분쟁이다. Paribas가 연지급확인서를 발행하고 연지급은행인 Santander가 사전에 서류를 할인한 후 상환청구를 하였으나 개설은행이 사기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피고가 하나는 개설은행이고 하나는 확인은행으로서 모두가 연지급은행으로서 연지급확인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모두가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할인한 은행으로서 하나는 확인은행이고 하나는 지정은행이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가 허위서류의 제시 또는 허위거래에 의한 사기거래로서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예외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기거래 방위권을 행사하여 할인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한 사건은 사기거래방위권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한 사건은 사기거래방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조적인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 사건의 근거조항

첫째 ADIB Bank V. Fortis Bank 사례는 UCP600¹⁵⁾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로서 UCP내용에 의하면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는 만기 전에 할인 또는 매입할

15) UCP600 Art12, B항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ing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UCP600 Art8 C항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another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UCC상 신용장조항에 근거하여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한 이상 이를 믿고서 선의로 매입하거나 할인한 은행에게는 그 후에 사기거래사실이 밝혀 다고 하더라도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ADIB Bank V. Fortis Bank 사건은 매입은행이 수출자의 환어음(360dys)을 인수하고 할인하여 수출자(Bunge)에게 지급하면 수출자는 개설은행에게 송금하여 결국 개설의뢰인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거래로서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유통을 위반한 거래이었다.

둘째 Paribas V. Santander 사례는 UCP500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로서 UCP500¹⁶⁾에 의하면 연지급신용장은 만기 전에 할인 또는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만기일에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의 형평법에 의한 권리양도의 효과를 근거로 하여 할인은행은 수익자의 권리양수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 사기행위를 한 수익자의 지위가 그대로 할인은행에게 양수되므로 신용장거래에 따른 선의의 소지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Paribas V. Santander 사건은 수익자인 영국의 Bayfern Ltd는 선적서류를 확인은행인 런던의 Banco Santander에게 할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확인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할인하여 수익자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만기일 전에 연지급은행인 Banco Paribas는 지정은행인 Santander은행에게 제시된 서류에 허위서류가 포함된 사실을 확정 통보하였고 Santander은행의 상환청구에 대해서 사기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

3. 사기거래의 내용

첫째 ADIB V. Fortis Bank 사례는 사기거래 내용이 금융 유통을 이용한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거래로서 신용장에 의한 물품거래가 아니었다. 연지급은행인 피고은행 ADIB는 개설은행인 Bank Awal의 자회사인 Saad Group의 개설의뢰에 따라서 발행된 US\$ 40,000,000의 L/C를 통지하고 확인하였다. 그 후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일치된 수출서류를 수령하여 개설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으면 수출자가 발행한 360일 화환어음 만기일에 확인은행 앞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다

16) UCP500 Art b항 ii호

If the Credit provides for deferred payment to pay on the maturity date(s) determinabl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Credit,

록 기재된 확인서를 받고 매입은행인 Fortis Bank가 선적서류를 할인지급한 후 us 지급은행인 ADIB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하였고 할인한 대금도 수익자인 Bunge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설은행으로 송금한 후 개설의뢰인이 사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Fortis Bank가 환어음 만기일에 연지급은행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DIB는 이를 신용장거래를 가장한 사기거래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용장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 특별조건에 사본서류의 제출도 가능하고 신용장상의 유효기일 외는 모든 하자사항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어음의 만기일이 360dys로 발급하게 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개설은행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연지급은행의 확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사본서류의 제출을 가능케 한 것은 서류를 위조하기 쉽게 하기위한 것이고 신용장상의 모든 하자사항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신용장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조건을 부가한 것이고 이는 연지급은행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60일간 장기간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장기간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신용장거래에서는 보통 180dys이하의 단기자금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를 연지급은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상환청구권만 확인은행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확인은행의 서류심사권을 사전에 봉쇄하고 자금만 확인은행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용장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ICC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행이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내용을 검토해보면 처음부터 사기거래를 할 의도가 숨어 있는 신용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을 할인한 은행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한 확인은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할인은행의 선의 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너무 쉽게 인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Paribas V Santander Case는 물품거래에 따른 일부 서류가 조작되어 제출된 거래로서 허위거래에 의한 사기거래이었다. 프랑스의 수입자 Napa petrol, Inc은 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5일에 Banco paribas(개설은행)에 의뢰하여 영국의 수출자인 Bayfern Ltd를 수익자로 하여 선적서류 발행일자 후 180일(1998년 8월 27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연지급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 신용장은 영국의 Banco Santander 은행에 의하여 통지되고 확인을 추가하였다. 수출자인 Bayfern은 1998년 6월 15일에 런던 소재 Santander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제시

하고 할인을 요청하였으며 Santander은행은 1998년 6월 16일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류를 할인하여 Royal Bank of Scotland의 Bayfern계정으로 US\$ 19.6 million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후 할인은행인 Santander은행이 개설은행(Paribas)앞으로 대금상환청구를 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일부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 이는 둘 다 사기거래였으나 첫째는 처음부터 물품의 선적이 없는 위장 수출거래였으나 둘째의 경우는 물품의 선적이 있었으나 관련 서류가 허위서류로서 물품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였다데 차이가 있다.

4. 판결내용

첫째 ADIB V. Fortis Bank 사건은 지정은행(할인은행)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 연지급은행인 ADIB는 할인은행에게 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미국법원의 판결) 이 미국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UCC에 근거하여 연지급은행으로서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믿고 신용장대금을 선지급한 지정은행의 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CP600에도 근거하여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지정은행은 그 만기일 전에 매입이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은행의 할인은 정당한 신용장거래이므로 연지급은행은 당연히 지급해야하고 사기거래에 의한 지급거절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반면에 둘째 Santander V. Paribas 사건은 할인은행인 Santander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연지급은행인 Paribas은행의 사기거래 방위권(Fraud Defence)¹⁷⁾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처럼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UCP500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이고 연지급은행은 연지급신용장에 대해서 개설은행의 동의 없이는 만기 전에 선지급할 수 없고 만약에 선지급하였다면 이는 신용장거래에 의한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지정은행에 대해서 선의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정은행을 영국의 형평법에 의한 권리의 양수인으로 보고 양수인은 양도인인 수익자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므로 수익자의 사기거래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되므로 선의의 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지급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UCP600에서는 연지급신용장의 사전 할인 및 매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지급은행의 연지급신용장에서 사기거래 방위권(Fraud Defence)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법

17) HC F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ition Europa Publication Ltd 1990, p183,184

원의 지급금지가처분이 없는한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 두 사건을 비교 검토해 보면 Santander V. Paribas 사건은 UCP500 하에서 영국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으로서 당시에는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연지급은행의 사전허락 없이 지정은행이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할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계산 하에서 행한 일종의 여신행위로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행위로 볼 수 없고 할인은은행은 서류의 할인 후 만기일 사이에서 사기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다만 연지급확인서만 발급된 상태이므로 연지급은행의 사기거래 방위권(Fraud Defence)에 대항할 수 없어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서 미국의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많은 비판의 의견이 나온 것이었다. 미국의 법조계의 견해는 연지급확약서의 발급 후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및 매입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보아야 하고 연지급확약서 발급 후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확정적인 사기사실의 통보만으로서 개설은행의 사기거래 방위권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었다. 이에 대한 주장은 미국의 UCC의 신용장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번에 판결한 미국 뉴욕법원 판결은 UCP600 하에서 연지급확약서 발급 후 지정은행은 얼마든지 신용장 통일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할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개설은행(연지급은행)이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후 만기일 내에서 발생한 사기거래 사실을 가지고 할인은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만약에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에 의한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할인은은행의 사기거래 관계사실을 밝혀서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아야 가능한데 미국법원에서는 연지급확약서 발급 후에는 지급금지가처분(injunction)¹⁸⁾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다.¹⁹⁾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지급신용장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연지급확약서 발급 후에는 사기거래의 방위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큰 거래로 보여 저서 연지급신용장의 발

18) 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s and Edition" , ButterWorths London 1993 p220

19) James Baners " Contrasting UK and US view of controvercial Banco Santander Case " DC Insight" Volume 6 no3 Summer 2000, p 5.

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연지급신용장 대신에 인수신용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며 동시에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의 한계가 모호해지면서 연지급신용장의 본래의 특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연지급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지급확약서 발행 이후 지정은행의 할인 및 매입 후 만기 전에 사기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의 상환청구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하면 어느정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지정은행은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할인 또는 매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지급은행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든가 하여야 하며, 할인 또는 매입한 후에는 반드시 연지급은행에게 할인 또는 매입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연지급은행이 지정은행에게 사전에 할인 또는 매입에 동의하였거나 할인 또는 매입사실을 지정은행으로부터 통지받고도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해주었다면 연지급은행은 더 이상 이러한 사기거래를 이유로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연지급은행은 사기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은행에게 이러한 사기거래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연지급은행으로 부터 사기거래사실을 통보받고도 연지급거래에 의한 할인 또는 매입을 하였다면 이러한 지정은행의 할인 또는 매입은 신의성실에 의한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연지급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연지급신용장거래는 반드시 할인이나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매입지정신용장을 발행해야 하고 자유매입신용장이나 어느 은행이라도 할인할 수 있는 open L/C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연지급은행이 사기거래사실을 통보할 수도 없고 또한 할인은행이나 매입은행도 사전에 연지급은행의 동의 없이 처리하므로 이러한 상환청구권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용장거래를 한다면 연지급신용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신용장상에 특별조건으로 추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10.
- 김한수, 박세운, 이대우, 김창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국제금융연구원, 1996.
- 박대위, 「신용장론」, 법문사, 1993.
-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1996.
- 유중원, 「신용장의 법리」, 육법사, 1993.
- 이대우, 김종락 공저, 「국제상거래론」, 두남, 2003.
- 이대우, 양의동 공저, 「신용장론」, 두남, 2011.
- _____, 「국제무역실무」, 두남, 2012.
- 이창식, 「수출입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1.
- 정찬형, 「영미어음 수표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1996.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도서출판 두남, 2008
- 한주섭, 「신용장론」, 동성사, 1993.
-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7th edition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 Ltd 1990.
- James J. White and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5th Edition". West Group, 2000.
- Michael Evan Avidon, "Letter of credit case Law survey Handbook", 1992.
- 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 2nd Edition" Butterworths London, 1993.
- Schmittoff. Clive M. "Export Trade(7th ed.)", London, Stevens and Sons, 1980.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Problems Queries" I.C.C. Publishing S.A, 1989.
-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ICC pub No.416), 1986.
-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ICC pub No.415).
- "DCINSIGHT" ICC Pub Vol 12 No 2 April-June, 2006.
- "DCINSIGHT" ICC Pub Vol 6 No 3 Summer 2000.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under UCP 500", Charles del Busto(I.C.C. Pub. No.535).
- "Insights into UCP600(DCI 2003 to 2008)" by Ron Katz ICC pub No.682.

“Guide to I.C.C. Uniforms Rules for Demand Guarantee”(ICC pub No.510).

“Documentary Credits UCP 500 and 400 compared” (ICC pub No.511).

“Uniform Custer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5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600.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American Sentences on the Reimbursement Request of Deferred Payment Credit (Focus on UCP500 and UCP600)

Dae-Woo Lee
Jong-Rack Kim

In the case of *Banque Paribas V. Banco Santander* in England for the reimbursement request of deferred payment credit by the nominated bank, the L/C-issuing bank refused to pay the proceeds at maturity because of a fraudulent transaction.

The reason of refusal was that the nominated bank, Banco Santander, had no right of payment in deferred credit before its maturity if it made payment of proceeds without notice to the issuing bank, that is, payment not based upon a credit transaction but on its own account.

However, in the case of *ADIB V. Fortis Bank* in America, the New York court made the decision that the deferred payment bank could not refuse to reimburse to the nominated bank, Fortis Bank, because of fraud. Its decision was based on the UCP600.

We hav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e above two cases—one was an English court's decision and the other an American's.

The English court's decision was made under UCP500, but the American court's was made under UCP600, which was revised in 2007.

As a result, we can expect that from now on in deferred payment credit transactions, the power of the nominated bank will be greater than before, but the issuing bank will bear the risk of the beneficiary's fraud, so the issuing bank will be hesitant to issue deferred payment credit.

Notwithstanding, we thought that the New York court decision would come into effect in the activation of deferred payment credit in practical trade transactions.

Key Words : Deferred Payment Credit, UCP500, UCP600, Fraud Defence, Reimbursement Claim, Issuing Bank, Nominated Bank, Negotiating Bank